

1. 의결주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매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건설현장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범위(대상) 및 방법 등을 간과할 수 있어 담당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를 새로이 마련하여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또한, 지하개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하안전평가등을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대행수행한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음.

그러나 대행실적 보고 양식과 실적확인서에 발급 별지양식이 상이함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 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이러한 자료가 제출된 후 검토까지 일정 기일이 소요되어, 전문기

관이 사업수주 일정에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행실적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대행실적 보고 때 제출하도록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또한, 대행실적 보고 시 작성·제출하는 별지양식 간 사업, 평가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전문기관에서 양식작성 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여 대행실적과 관련된 별지 용어를 통일하여 전문기관 업무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안 별표 5 신설)

나. 참여기술자 자료 제출(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다. 대행실적 관계 용어 일원화(안 별지 제15호, 제16호, 제17호 서식 개정)

1) 별지 제15호서식의 붙임

2) 별지 제16호서식의 붙임

3) 별지 제17호서식의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국토교통부령 제 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안)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1. 점검 개요

가. 점검대상 :

나. 점검목적 :

2. 점검 결과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결과
안전 관리 계획	① 지하개발사업자		
	1. (소규모)지하안전평가시의 협의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있는가?		
	- 재협의 사항(굴착깊이 3m이상, 굴착면적 30%이상 증가, 흙막이 및 지지구조, 차 수공법 변경 등)이 있는가?		
	- 재협의 사항이 있을경우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소규모)지하안전평가시의 지질현황, 지하수조건, 주변시설물(지상, 지하)의 변동이 있는가?		
	- 대상사업 주변에 협의 내용과 다르게 인 접하여 굴착(철거)공사 등이 있는가?		
	2. 흙막이 시공상태(측면파일, 중간파일, 띠장, 지지구조 등)는 설계도면과 일 치하는가?		
	-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 는가? (사업계획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 리대장 수록, 별지 3 서식)		

	3. 계측계획(설치시기, 수량, 위치, 빈도, 관리기준)은 준수[(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하고 있는가?		
	- 계측관리 계획은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 계측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가?		
	- 계측관리기준 초과 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서 제시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있는가?		
	4. 차수그라우팅 공법 적용시 시험시공을 실시하였는가?		
	- 시험시공 결과에 따라 (소규모)지하안전평가서 제시한 투수계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 차수공법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하였는가		
	5. 발파암 굴착 전 적절한 시험발파를 수행하였는가?		
	- 공사장 주변에 대하여 발파 영향을 확인하고 진동·소음은 허용기준은 준수하고 있는가?		
	6. 공사 현장 인근 배수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 일일 토사 유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가?		

	- 공사 현장내(벽체, 바닥 등) 지하수 유출이 있는가?		
	- 지하수 유출시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가?		
	- 현장 부지 내·외 배수로 정비상태와 우기시 배수계획(맨홀, 침사지, 펌핑계획 등)은 적정하게 수립 및 이행 되고있는가?		
	7. 대상사업 영향범위내 지하매설물 CCTV조사 및 지하물리탐사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협의 내용대로 적정시기에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가?		
안전 관리 규정 (규칙 별표1, 별표3)	② 지하시설물관리자		
	1.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변동 사항은 있는가?		
	2.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이 조직표에 따라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3. 안전점검은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가?		
	-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점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지반침하 육안조사는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 조사는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 기존에 공동이 확인된 경우 추적관리 또는 보수보강이 이루어졌는가?		

	4.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5. 지반침하 등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점검일시 :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보고서

전문기관		사업개요							대행실적				비고
상호	등록 번호	대상사업 종류	사업명	지하개발 사업자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구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 기간	
						최대 굴착깊이	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대행실적을 제출합니다.

붙임 지하안전평가서등 1부,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참여기술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참여구분, 과업참여기간, 교육이수 현황 등), 기술심의(자문) 증빙
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전문기관 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구분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사용용도			제출처				
	용역명		용역금액(백만원)		용역기간		
실적확인 내용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부수				부
	대상사업 종류		사업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전문기관 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구분	[] 지하안전평가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사용용도		제출처				
용역명		용역금액(백만원)				
번호	기본현황			사업규모		비고
	대상사업 종류	사업명	지하개발 사업자	사업장 위치	최대 굴착깊이	
1						
2						
3						
책임(참여)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참여구분	과업 참여기간		
이하여백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대행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 201 - 3584